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09 |
|----------|-----|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7. 서울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17.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울시장)

1. 제안이유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좋은 돌봄 인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인증대상 기관은 노인복지시설과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4조)
- 시장은 매년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5조)
- 인증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대상 기관의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인증의 신청은 관할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하며, 인증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법인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안 제9조)
- 인증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인증기관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 시장은 인증요건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증 및 재정적 지원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16. ~ 9. 5.) 결과: 의견 있음(별도 첨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서울형 인증제 도입 이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울형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대상 확대(안 제4조)

- 안 제4조는 좋은 돌봄 인증의 대상 기관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재가 방문요양기관(1,443개소)의 90%가 소규모 개인 운영 시설로 이중 7.5%(98개소)만 지자체 관리 감독 체계하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로써 대부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및 종사자 처우 등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됨에 따라 인증제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기 존 | 변 경 (확대) |
|------|---|---|
| 인증성격 | 시설 인증 | 시설 + 서비스 인증 |
| 인증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케어센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케어센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시설 등 |

□ 좋은 돌봄 인증 신청 절차 규정(안 제7조, 제8조)

○안 제7조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인증의 신청은 관할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하며, 인증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

○안 제8조는 관련 조항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청에서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여부를 통보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좋은 돌봄과 연관한 기관들의 돌봄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짐.

- 좋은 돌봄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근거 규정(안 11조)
 - 안 제11조는 서울시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좋은 돌봄 인증기관의 취소 근거 규정(안 13조)
 - 안 제13조는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으로써 돌봄기관 서비스질 향상 및 표준화모델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단, 현재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 근거를

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하고 있으나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서울형 돌봄인증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 어르신 복지시설 현황

참 고 1

서울형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데이케어센터 | | |
|--|----------|--|-----------|---|
| 2 분야 5 영역 21 지표 (37 세부지표) | | 2 분야 5 영역 24 지표 (36 세부지표) | | |
| I. 필수이행 영역 | | I. 필수이행 영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관의 비전 ②전문인력 ③윤리경영 ④재정회계 관리 ⑤영양 서비스 ⑦안전관리 ⑧인권보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센터의 비전 ②전문인력 ③윤리경영 ④재정회계 관리 ⑤서비스계획 ⑦송영서비스 ⑧안전설비 ⑨사고대책 마련 | | |
| II. 기본이행 영역 | 기본요건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인적 자원 ②시설 환경 ③윤리경영 ④지역사회 연계 | 기본요건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인적 자원 ②시설 환경 ③윤리경영 |
| | 맞춤돌봄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서비스 계획과 평가 ②영양 서비스 ③의료재활 서비스 ④퇴소지원 | 맞춤케어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치매대응전략 ④송영서비스 ⑤신체기능 돌봄 ⑥인지기능 돌봄 ⑦야간이용 서비스 |
| | 안심돌봄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안전관리 ②재해 및 화재관리 ③응급상황 관리 ④감염병 관리 | 안심케어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응급상황 관리 ②위생청결서비스 ③건강체크 시스템 |
| | 인권보호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이용자 보호 | 이용권보장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서비스 안내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이용자 권리보호 |

참 고 2 어르신 복지시설 현황

□ 시설 유형별 현황

| 구분 | 계 | 주거복지시설 | |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학 대 피 해 노 인 응 터 | 장 사 시 설 | 노 인 의 재 |
|------------------|----------------|-------------------------------------|--------|--------------------------------------|------------------|--|---|--|------------------|---------------------------------|------------------|------------------|--|--------------------------------------|------------------|------------------|
| | | 양로원 | | 어 르 신 공 생 활 가 정 | 복 지 주 택 | 요 양 시 설 | 노 인 요 양 공 생 활 가 정 | 주 야 간 보 호 | 단 기 보 호 | 재 가 어 르 신 지 원 | 방 문 요 양 | 방 문 복 육 | | | | |
| | | 무 료 | 일 반 | | | | | | | | | | | | | |
| 계 | 1,148 (362) | 7 (7) | 4 | 2 | 11 | 208 (61) | 325 (12) | 299 (188) | 31 | 28 (28) | 98 | 69 | 2 (2) | 1 (1) | 18 (18) | 45 (45) |
| 시립 | 52 (50) | 2 (2) | | | | 11 (9) | | 20 (20) | | | | | | 1 (1) | 18 (18) | |
| 구립 | 133 (111) | | | | | 23 (19) | 5 (1) | 102 (91) | 1 | | 2 | | | | | |
| 법인 | 400 (195) | 5 (5) | 3 | 1 | 10 | 60 (33) | 41 (11) | 110 (71) | | 28 (28) | 56 | 39 | 2 (2) | | | 45 (45) |
| 개인 | 563 (6) | | 1 | 1 | 1 | 114 | 279 | 67 (6) | 30 | | 40 | 30 | | | | |
| 입 소 대 상 | | 65세 이상 -무료:기초 수급자 -유료 :일반인 | | |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3-5등급:입소 판정자 -무료:기초수급자 -유료:일반인 (본인 부담 20%) | |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이용 - 무료 : 기초수급자 - 유료 : 일반인 (본인부담 15%) - 재가지원은 저소득 등외자이용 | | | | | | | | |
| 비 고 | | | | | | ▶시립복지 관병설 요양시설(4개소) | | | | | | | ▶시립장사시설 부속시설 : 서울추모공원(1)/시립승 화원(12) | | | |

어르신 복지시설 현황

(기준일 : 18.7월말 기준)

| 합 계 | 노인 복지 시설 | | | | | | 장사시설 | 노인집 |
|-------|----------|------|------|------|----------|------------|------|-----|
| | 소 계 | 주거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
| 1,148 | 1,086 | 24 | 533 | 525 | 2 | 1 | 18 | 45 |

※ () 안의 시설수는 보조금 지급 시설 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계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
|-------|-------|------|-------|-------|------|------|
| 3,431 | 343 | 51 | 1,443 | 1,297 | 90 | 207 |

※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209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 성안 및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심사의 모든 사항을 복지재단에 위임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공조적은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 복지재단에만 인증심사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정한 임의규정으로 관련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해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에 인증심사 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기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에 <u>인증심사를 의뢰</u>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심사) ----- ----- ----- <u>인증심사를 의뢰</u> <u>할 수 있다.</u> |